

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원회안)

의안 번호	2906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08. 12. 8.

제안자 : 환경노동위원장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침체가 본격화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기관의 미취업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「청년실업해소특별법」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.

법률 제 호

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7185호 「청년실업해소특별법」 부칙 제2항(유효기간) 중
“2008년 12월 31일”을 “2013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①(시행일)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유효기간) 이 법은 <u>2008년 12월 31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①(시행일)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유효기간) 이 법은 <u>2013년 12월 31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</p>

